CITY OF BELLFLOWER
"GROWING TOGETHER"

staff report

직원 보고서

수신인: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께

제프리 L. 스튜워트, 시행정 담당관 귀하

발신인: 시 변호사 조세프 W. 파논
시서기 데브라 D. 보셥

제목: 선거 구획정 시안(지도)과 잠재적 선거구역 경계선을 사려하기 위한 공청회와;

선거구 경계선 제안 지도 채택; 벨플라워시 유권자가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데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는 특별 선거의 소집; 선거를 2016 년 11 월 8 일 주 전체 총선과 통합하는 요청; 그리고 시의 발안에 대한 서면 논거의 우선순위 책정과 시 변호사에게 공정한 분석 작성 지시에 대한 사려

결의안 제 15-79 호- 유권자에게 시의원 선출을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 가부를 묻는 2016 년 11 월 8 일 화요일에 실시될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공지하는 벨플라워시 시의회 결의안

결의안 제 15-80 호- 선거법 10403 조에 준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감리위원회에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2016 년 11 월 8 일의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와 통합을 요청하는 벨플라워 시의회의 결의안

결의안 제 15-81 호- 시의 발안에 대한 서면 논거 우선순위 설정과 공정한 분석 작성을 시 변호사에게 지시하는 벨플라워 시의회의 결의안

날짜: 2015 년 10 월 12 일

직원 보고서 – 제 4 회 선거구획 공청회; 유권자에게 소선거구제를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할 특별 지방자치 선거 소집 고려
2015 년 10 월 12 일
8 쪽 중 2 쪽

<u>종합 요약</u>

제 4 회 공청회 후 지도와 결의안을 채택하는것은 벨플라워 시의 유권자에게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시의원을 선출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구 경계선을 성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5 년 12 월 1 일 전에 본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투표 권리 법아래 로스앤젤리스 대법원에 제기되었던 *멜리즈 외 다수 대 벨플라워시 외 다수,* 사건 번호 제 BC551555 호 (*Melliz, et al., v. City of Bellflower, et al*., Case No. BC551555)의 합의 계약에 준거한 것이다.

<u>추천 사항</u>

공청회 실행과 여론의 의견을 수렴한 후:

- 주민 투표 발안에 포함될 선거구역과 경계선 제안 획정 지도를 책정하고;
- 선거소집, 통합 요청과 서면 논거 접수 우선순위 책정 및 시 변호사에게 공정한 분석 작성을 지시하는 결의안도 채택한다.

<u>재무적 영향</u>

2016 년 11 월 8 일에 있을 카운티의 주 전체 총선거와의 선거 통합 비용은 약 $51,000 이며 상당한 법률, 전문가, 자문위원, 수속비용이일반 자금 계좌번호 010-43600-1210 에서 지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작성되는 이시점에서 정확한 재무적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u>공지 사항</u>

벨플라워시의 시 경계선 내 인쇄 및 간행 <u>둘 다</u> 가 되는 일반시판 신문이 없으므로 2015 년 9 월 30 일의 공청회 공지문은 시청, 브라켄식 도서관, 벨플라워 전철역, 톰슨 공원, 심스 공원 그리고 시의 웹사이트에 공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청회 공지문은 *프레스텔레그램*(영어와 크메르어), *라오피니온* (스페인어), *에이션저널*(필리핀어), 그리고 *한국일보*(한국어)에 2015 년 9 월 30 일 공시되었습니다.

직원 보고서 – 제 4 회 선거구획 공청회; 유권자에게 소선거구제를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할 특별 지방자치 선거 소집 고려
2015 년 10 월 12 일
8 쪽 중 3 쪽

<u>배경</u>

시는 현재 "집행부"인 '시 의회'를 대선거구제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대선거구제"는 전체 관할 구역의 유권자가 해당 집행부의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제도이며 후보자들은 관할 구역 내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선거구제"의 경우 후보자는 한 선거구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선거구에 사는 유권자에 의해서만 선출됩니다.

2014 년 7 월 14 일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에 따라 *멜리즈 외 다수 대 벨플라워 시* (*Melliz, et al. v. City of Bellflower)* 라는 소송이 시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시 측은 2015 년 1 월 15 일 소송을 타결했습니다. 이 합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 측은 시의 유권자가 시 의원 선출과 관련한 시 선거 제도를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조례 제정 제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결의안을 심의 및 조치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에는 선거구 획정 지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지도는 제안이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 확정됩니다.

2015 년 5 월 11 일 시 의회는 2016 년 11 월 8 일에 있을 투표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할 소선거구 획정 지도를 구상하는 절차를 정식 착수했습니다. 또한, 시는 유권자에게 제시할 시 의회 선거구 획정안 준비 절차를 시 측에 조언하는 재획정/인구학 방면의 중견 자문 회사(NDC)도 고용했습니다.

시는 5 개 시 의회 선거구로 구성된 시 선거구 획정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 의회가 채택한 최종안(지도)은 2016 년 11 월 8 일 투표 안내 자료에 게재되며,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변경 여부는 전체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합니다.

시 의회는 적절한 공고를 거친 공청회를 2015 년 8 월 24 일과 2015 년 9 월 14 일 및 2015 년 9 월 28 일에 3 회 시행했으며(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0010 조), 2015 년 10 월 12 일 공청회는 본 건에 대한 네 번째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공고뿐 아니라 각 공청회 시 통역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등 소수 집단 언어로 제공되었으며, 직원 보고서 번역본도 공청회와 시청 웹사이트에서 제공됐습니다.

더 자세한 배경 정보는 2015 년 8 월 24 일, 9 월 14 일, 9 월 28 일 실무진 보고서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제에 관한 2015 년 9 월 28 일의 3 차 공청회에서 National Demographics Corporation(NDC)의 인구 통계 전문가 더글라스 존슨은 NDC 의 3 개 설계도를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제안은 Mexican-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MALDEF)로 부터 받은 것이고, 버츠씨의 계획안은 NDC 가 작성하여 "남부 대안 1"로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의견 . 2015 년 9 월 28 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제안별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켄 글렌은 91 번 고속 도로 남쪽 지역 물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부 대안 1 에 찬성했습니다.
- 로버트 로렌스는 자신의 동네와 관심 지역을 유지하는 설계도 A 를 최선책으로 찬성했습니다.
- 마리오 차베스는 설계도 C 를 더 정비된 안으로 지지했습니다.
- 세티야 콜먼은 설계도 C 를 지지하고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같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엔리크 아란다는 설계도 A 를 지지하고 벨플라워 시에 적용되는 투표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존 폴 드레이어는 설계도 C 가 학군들과 병행하므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구별 유권자 등록 및 투표율 자료, 소선거구제로의 변경 이유와 타당성, 멜리즈 *Melliz* 소송의 타결 조건, 특정 선거구에 시 의원 출마자가 없는 경우 해결책 등에 관한 일련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질문들은 논의의 일부로 답변되었습니다.

MALDEF 측에서는 시 의회가 채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제시한 안들의 장점에 관하여 이번이나 이전 공청회에서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u>시 의회 토의</u> . 공청회 및 토의 후, 시 의회는 각 안의 2 번 선거구는 3 번으로, 3 번은 2 번으로 번호를 다시 매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시 의회는 또한 선거구별 선거 일정도 1, 3, 5 선거구는 2019 년(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리 위원회가 시 의원 총선거를 주 전체 총선거와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2018 년) 중으로, 2, 4 선거구는 2021 년(또는 통합이 허용되는 경우 2020 년) 중으로 정했습니다.

시 의회는 이어 시 측 자문(NDC)이 작성한 설계도와 여론이 제시한 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 의원마다 NDC 설계도 A 에 대한 선호 의사를 표명했으며, 여타 안들과 선거구 획정 절차의 지침으로 시 의회가 채택한 기준과 관련하여 이 같은 선호 이유를 밝혔습니다.

슈나블레거 시 의원은 시 의회가 유권자에게 제시할 우선안으로 설계도 A 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발의했습니다. 쿱스 시 의원이 재청한 이 발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시 의회는 이어 4 차 공청회를 2015 년 10 월 12 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직원에게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9222 조와 제 12001 조(EC 9222 와 12001) 및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 34871 조(GC 34871)에 따라 해당 결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u>투표 발의안</u> . EC 9222 와 12001 및 GC 34871 에 의하여 권한을 지닌 시 의회는 시 의원 특별 선거 시행일을 2016 년 11 월 8 일로 발표하고 벨플라워 시의 유권자가 시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제안(발의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첨부 1 및 2)**. 시 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리 위원회에 이 특별 선거를 2016 년 11 월 8 일에 있을 카운티의 주 전역 총선거와 통합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있습니다**(첨부 3)**.

<u>합의 계약</u> . 다음은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에 따라 *멜리즈 외 다수 대 벨플라워 시(Melliz, et al., v. City of Bellflower, et al.*)이라는 명칭에 사건 제 BC551555 호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 계약의 일부 조항들입니다.

- 어느 당사자도 일체의 법적 책임 또는 부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2015 년 12 월 1 일 이전까지 시 의회는 시 유권자들이 시 의원 선출 방식을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발의안을 2016 년 11 월 8 일에 있을 카운티의 주 전역 총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통합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시 측이나 시를 대리하는 시 의원 중 어느 누구도 투표 발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다. 각 시 의원은 이 발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개인 시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으나 "시 의회 의원"이라는 직함 또는 그와 비슷한 어휘를 사용하여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 시 의회가 선거구 획정 투표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게재하면 멜리츠(*Melliz)* 건의 원고/피고는 그 사건의 기각을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u>공정한 분석</u> . EC 9280 에 따라 시 의회는 시청 직원에게 해당 발의안을 시의 변호사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시 변호사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정보 팸플릿 견본에 포함시킬 공정한 발의안 분석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첨부 4)**.

<u>서면 논거</u> . 시 의회가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발의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 의회 또는 시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 시 의회 의원 또는 발의안에 대하여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인 유권자 또는 진정한 시민 협회 또는 유권자와 협회 연합체는 시의 발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서면 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EC 9282[b])**(첨부 4)**.

정해진 시한 안에 특정 발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이 둘 이상 제출되는 경우, 시청 직원은 EC 9287 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해당 발의안을 찬성하는 주장 하나와 반대하는 주장 하나를 선택하여 인쇄하고 유권자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시청 직원은 논거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주장들에 대하여 지명된 순서대로 선호도와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a) 시 의회 또는 **<u>시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u>** 시 의원 **(주: 합의 계약의 조건[상기 내용 참조]에 따라 이 조항은 본 발의안에 대하여 적용이 금지됩니다.)**

b) 개인 유권자 또는 진정한 시민 협회 또는 해당 발의안에 진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와 협회의 연합체 **(주: 이 기준에 따라 청원 절차를 통해 제시된 투표 발의안에는 참조 표시가 달리며, 입법부가 발의한 투표 발의안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자"의 정의는 EC 342 참조.)**

c) 진정한 시민 협회

d) 발의안에 대하여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인 유권자

<u>박론</u> . EC 9285 에 따라, 시 의회는 시 의원 선거에서 제시된 시 측의 발의안에 대하여 반박 주장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 제 10-31 호를 채택했습니다**(첨부 5)**.

<u>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 시한</u>

2016 년 8 월 11 일	주장 제출 시한 공고를 공표/게시하는 마감일
2016 년 8 월 12 일	감리 위원회와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에게 투표 발의안 통합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마감일
2016 년 8 월 17 일	투표용지 게재용으로 이전에 제출한 발의안을 수정/취소하는 결의안을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과 감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마감일
2016 년 8 월 19 일	논거 및 시 변호사의 공정한 분석을 제출하는 마감일
2016 년 8 월 20~29 일	달력으로 10 일간의 공개 검토 기간
2016 년 8 월 29 일	박론 제출 마감일
2016 년 8 월 30 일~9 월 8 일	달력으로 10 일간의 공개 검토 기간

직원 보고서 – 제 4 회 선거구획 공청회; 유권자에게 소선거구제를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할 특별 지방자치 선거 소집 고려

2015 년 10 월 12 일

8 쪽 중 8 쪽

<u>첨부서류</u>

1. 결의안 제 15-79 호, 제시된 주민 발의안에 대한 선거 소집 9
2. 제시물 A, 주민 발의안 전문 및 지도 (조례 제 1302 호) 15
3. 결의안 제 15-80 호, 통합 요청 21
4. 결의안 제 15-81 호, 주장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공정한 분석 작성 23
5. 결의안 제 10-31 호, 박론 제공 25
6. 2015 년 8 월 24 일 직원 보고서 29
7. NDC 설계도 A 33
8. NDC 설계도 B 35
9. NDC 설계도 C 37
10. MALDEF 계획 1a 39
11. MALDEF 계획 1b 41
12. NDC 설계도 A 를 지지하는 대니 밀러씨의 여론 의견 43
13. NDC 설계도 B 와 C 를 지지하는 존 폴 드레이어씨의 여론 의견 44
14. 존 버츠 계획안 (접수 원문) 45
15. NDC 설계도 A 또는 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에드 아코르네로씨의 여론 의견 47
16. 2015 년 9 월 14 일 직원 보고서 49
17. 버츠 계획/설계도 B 변경안(“남부 대안 1”) 53
18. 2015 년 9 월 28 일 직원 보고서 55

벨플라워 시

결의안 제15-79호

유권자에게 시의원 선출을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 가부를 묻는 2016년 11월 8일 화요일에 실시될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공지하는 벨플라워시 시의회 결의안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9222와 12001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34871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벨플라워시의 시의원 선출 방법에 관해 묻기 위하여 2016년 11월 8일 화요일에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시행하도록 한다.

현재 벨플라워시는 5명의 시의원을 대선거구제로 선출하며;

시의원 선거제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대선거구제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지에 대한 발안이 벨플라워시의 유권자에게 제시된다.

대선거구제 후보자는 시내 어느 지역에나 거주하면 되고 각 시의원은 시 전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시의원 선거제 대안 제도 중 하나는 시내 지리적으로 나누어진 선거구에서 시의원을 선출(소선거구제) 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시의원 후보자는 대표하고 싶은 선거구 내에 거주해야 하며 그 선거구 내 거주자만이 그 선거구의 대표자가 누가 될지 결정하는 투표 권한이 있다.

대선거구제의 후보자는 시의 모든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므로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반면 소선거구제 후보자는 후보자가 거주하는 특정 선거구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면 되므로 선거운동 비용이 시 전체를 상대로 할 때보다 낮을 것이라고 소선거구제 지지자는 지적한다.

대선거구제는 시의원 당선자가 선거 과정 내내 시의 한 지역이나 특정 선거구만의 유권자가 아닌 시 전체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고 대선거구제 지지자는 지적한다.

소선거구제는 시의원 당선자가 선거 과정 내내 시 전체 유권자가 아닌 선출자 자신의 구역만의 유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정 선거구의 시의원은 그 구역 선거구민의 특정 필요사항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것이라고 소선거구제 지지자는 지적한다.

시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시의원을 선출할지 그리고 선거제 방법을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할지에 대해 벨플라워시의 유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으며;

2015년 5월 26일 시의회는 제안된 선거구 경계선(선거구획정안) 도면의 지침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승인하였다.

법적 준수사항

1. 선거구의 경계선은 법에 따라 각 구역이 최소 동등한 인구수로 구성되도록 성립되어야 한다.

2. 연방 투표 권리법 제2조에 따라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거부 또는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성립되어야 한다.

3.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미국 대법원 사건 샤 대 레노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Shaw v. Reno,* 509 U.S. 630 (1993) 및 그 후대가 성립한 원칙을 위반하는 불공평한 선거구 개편은 하지 않는다.

기존의 선거구 획정 기준:
(숫자는 참고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며 우선순위는 아님)

4.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학교 및 공원과 연결된 동네, 도시인구, 도시계획 지역, 사회적 관심사(이익), 농업, 공업 및 서비스업 등의 산업적 이익과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를지닌 지역사회나 그 밖에 지역적으로 지역사회나 동네로 인정된 개념을 실행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한다.

5.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지형, 지리 및 고속도로나 수로와 같은 지리적 인공물과 같은 가시적 특징도 실행 가능한 한 고려한다.

6.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간결화 한다.

7.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가능한 한 최대한 근접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만든다.

8. 구역 내 인구수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이후 평균보다 높은 인구 증가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진 선거구의 인구수는 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 수 내에서 줄일 수 있다.

9.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획정 과정 중 알려지게 되어 시의회에 의해 정식 채택된 요인들을 준수해야 한다.

10. 2명 이상의 재임자를 한 선거구로 합병하는 것이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 및 법과 상충되지 않으므로 선거 구역의 경계선은 이를 기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은 2명 이상의 재임자를 한 선거구에 넣는 것을 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되 단, 그것이 캘리포니아와 미연방 헌법 및 법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2015년 6월 8일 시는 시민들이 선거구획정(지도)을 그려서 제출할 수 있는 시민참여 키트를 배포하였다.

벨플라워시는 2015년 6월 9일에 시의 인구통계자문인 National Demographics Corporation (이후 “NDC”)의 설계도 A,B,C를 발표했고 추가로 Mexican-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MALDEF)로부터 2개의 제안계획서를 받았고, 벨플라워시의 한 시민이 한 지도안을 제출했으며 이것을 시의회의 지시에 따라 여론 의견, 시의회 토론 및 시의회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 시의 자문이 추가 설계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10010조 조항에 따르면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를 변경하는 정치적 세부 구역은 해당 통치 기구가 그 제안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투표를 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 2회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시의회는 2015년 8월 24일, 2015년 9월 14일, 2015년 9월 28일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사려 했다.

2015년 9월 28일 공청회에서 시의회는 시 자문에게 제출된 모든 계획안의 구역번호를 변경하여 구역 2번이 3번으로, 3번은 2번으로 되도록 만장일치로 지시하였으며;

2015년 9월 28일 공청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제34870 – 34884조에 준하여 설계도 시안 A를 시의 획정 계획안으로 유권자에게 2015년 10월 12일 공청회 이후 제시하기로 시의회는 만장일치 표명하였다.

2015년 9월 28일 공청회에서는 선거 방법을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선거구역 경계선을 성립하는 조례가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어 발효되는 때에 재임 중인 시의원은 선출된 재임 기간이 만기 되기까지, 그리고 후임자가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재임을 지속하며 각 시의원의 재임 기간이 만기 되면 시의원의 후임자를 조례에 의해 성립된 선거구별로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34878조에 따라 시의회는 결정하였다.

2015년 9월 28일 공청회에서는 만약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벨플라워 유권자가 승인하면 제1, 3, 5 구역의 시의원은 2019년 (또는 2018년 11월- 만약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리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301조에 따라 2018년 11월 주 총선과 시의 지자치 총선거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한다면) 지방자치 총선거 때 부터 선출하고 그 후로 4년에 한 번씩 선출하며 제2와 4구역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2021년 (또는 2020년 11월- 만약 통합이 허가되면) 지방자치 총선거 때 부터 선출하여 그 후 4년에 한 번씩 선출하기로 시의회는 결정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제34870-34884조의 조항에 따라 일반법 아래 소선거구제 채택안은 해당 시의 유권자에게 제안된 선거구역 경계선과(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벨플라워 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선포하며 결정하고 명령한다.

제1조.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9222 와12001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34871조에 따라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유권자에게 다음 질문("조례 번호 제1302")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벨플라워시에서 실시할 것을 명령한다.

조례 번호 제1302에 기술된 대로 벨플라워시의 시의원을 대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로 선출할까요?	**예**
	아니오

제2조. 유권자에게 부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전문과 선거구획정안 지도는 제시물 A 주민 발의안 전문(조례 번호 제1302)으로 첨부되었다.

제3조.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한 투표 요건은 총투표수의 과반수 (50% + 1)이다.

제4조. 본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의 서식과 내용은 현행법 요건에 따른다.

제5조.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4401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0242조에 따라 투표소는 선거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한다.

제6조. 본 결의안에 게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지방 자치선거 실시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7조. 선거 시간과 장소는 공지되며 현행법의 요건에 따라 시 서기는 선거의 시간, 형태와 방식에 대해 추가 선거공지를 할 수 있도록 위임, 지침 및 지시를 받았다.

제8조. 만약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리위원회가 주민 발의안에 대한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2016년 11월 8일 주 총선거에 통합시키는 것을 허가하면 상기 조항 제 5,6 및 7 에 상충되지 않는 한, 두 선거의 도시 내 선거구, 투표소, 선거 관리인은 동일하게 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부가 특별 지방자치 선거 개표를 점검하며, 한 건의 선거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진행한다.

제9조. 시장 또는 의장은 벨플라워 시의회에 의해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표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시 서기, 혹은 그녀의 정식 임명 대리인이 이에 입회하도록 지시받았다.

제10조. 시 서기는 본 결의안의 통과 및 채택을 증명하고 결의안 정본 책자에도 동내용을 처리하며 본 결의안이 통과되고 채택된 시의회 진행 회의록에도 기록한다.

2015년 _____에 벨플라워시의 시의회에 의해 통과, 승인, 채택되다.

_____
스콧 A. 랄슨, 시장

입회인:

_____
데브라 D. 보셥, 시 서기
첨부문서:

제시물A - 주민 발의안 전문 및 선거구획정안 지도
(조례 번호 제1302)

Doc 328849

제시물 A
주민투표 발의안 전문

벨플라워 시
조례 제1302호

벨플라워시 지방자치법 2.28장에 제 2.28.020, 2.28.030, 2.28.040조를 추가함으로써 시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제를 대선거구제에서 선거구 획정과 그 선거구획 내에서 선거 일정을 잡아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조례

벨플라워시는 시의원 선출에 모든 주민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벨플라워시는 현재 대선거구제로 5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일부 대중은 벨플라워시 의원 선출 제도를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의원 선출에 대한 모든 주민의 전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선거구제에서 후보자들은 도시의 아무 지역에서든지 거주할 수 있으며 각 시의원은 벨플라워시 전역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시의원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그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만 자신들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투표 권한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제34870~34884조에 따르면, 일반법에 준하여 시는 선거구획정안과 더불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위한 발안을 그 도시의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10010조 조항에 따르면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를 개정하는 정치적 세부 구역은 해당 통치 기구가 그 제안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투표를 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 2회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시의회는 2015년 8월 24일, 2015년 9월 14일, 2015년 9월 28일, 2015년 10월 12일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사려 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제 34870~34884조에 따라 벨플라워시의 시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제시물 1번(Exhibit 1)에 반영된 대로 5개의 1인 선거구로 된 소선거구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벨플라워 시민들은 아래와 같이 조례를 정한다.

<u>제1조.</u> 벨플라워 자치법의 2.28장은 제2.28.020 에서 2.28.040조까지 추가로 첨부됨으로써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8.020.조 소선거구제.

A.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제34871(1)조에 준하여, 벨플라워 시의원은 다섯 개의 단일 의원 구역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B. (1) 2019년 3월에 있는 시 총선거부터, 제2.28.030조에서 제정한 그리고 차후 주 정부 법의 조항에 의해 재분배된 선거구에서 시의원을 선출하기로 한다. 선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제34871조에서 정의하는 소선거구제 즉, 각 선거구에서 해당 유권자들이 한 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각 시의원은 후임자가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4년의 임기를 가진다.

(2) 본문 (3)의 조항 외에, 선거구를 대표하여 선출된 시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또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라야만 한다. 또한, 모든 시의원 후보자는 지명서가 발급되는 당시 선출되고자 하는 선거구에 거주해야 하며 또한 등록 유권자이어야 한다. 시의원이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를 종료할 시에는 종료 30일 이내에 그 선거구 내 대체 거주지를 확립하지 않을 경우 그 선거구의 의원석은 즉각 공석이 된다.

(3) 본 조항의 다른 세부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성문화된 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재직 중인 시의원들은 그들의 임기가 만기 될 때까지 혹은 후임자가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재직한다. 각 의원의 임기 말에 각 의원의 후임자는 제2.28.030조에서 설정한 선거구에서 제2.28.040에서 규정된 대로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제 2.28.030조 시의원 선거구 획정.

A. 제 2.28.040조에 준하여, 시의원은 아래 규정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1) 제1 의원선거구는 Somerset Blvd와 도시의 서쪽 경계선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Somerset Blvd를 따라 Cabell Ave.까지,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Cabell Ave.를 따라 Potter St.까지, 거기에서 남동쪽과 동쪽으로 Potter St.를 따라 Cornuta Ave.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Cornuta Ave.를 따라 Lindale St.까지, 거기에서 동쪽으로 Lindale St.를 따라 Woodruff Ave. 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Woodruff Ave.를 따라 Rosecrans Ave.까지, 거기에서 동쪽으로 Rosecrans Ave.를 따라 도시의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시 경계선을 따라 시작점까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2) 제2 의원선거구는 Somerset Blvd. 와 Bellflower Blvd.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Somerset Blvd를 따라 Cabell Ave.까지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Cabell Ave.를 따라 Potter St.까지, 거기에서 남동쪽과 동쪽으로 Potter St.를 따라 Cornuta Ave.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Cornuta Ave.를 따라 Lindale St.까지, 거기에서 동쪽으로 Lindale St.를 따라 Woodruff Ave. 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Woodruff Ave.를 따라 Rosecrans Ave.까지, 거기에서 동쪽으로 Rosecrans Ave.를 따라 도시의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시 경계선을 따라 Highway 91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Highway 91을 따라서 Bellflower Bike Trail까지,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Bellflower Bike Trails를 따라 Cornuta Ave.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Cornuta Ave.를 따라 parcel APN 7109003051 (16331 Cornuta Ave.)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parcel APN 7109003051의 북쪽 가장자리와 parcel APN 7109003013 (16326 Eucalyptus Ave.)을 따라 Eucalyptus Ave.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Eucalyptus Ave.를 따라 Alondra Blvd.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Alondra Blvd.를 따라 Bellflower Blvd.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Bellflower Blvd.를 따라 시작점까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3) 제3 의원선거구는 Somerset Blvd. 와 도시 서쪽 경계선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Somerset Blvd. 를 따라 Bellflower Blvd.까지, 거기에서 남쪽으로 Bellflower Blvd.를 따라 Flower St.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Flower St.를 따라 Clark Ave.까지, 거기에서 남쪽으로 Clark Ave.를 따라 Walnut St.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Walnut St.를 따라 도시 경계선까지, 거기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시 경계선을 따라 시작점까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4) 제4 의원선거구는 Ardmore Ave.와 시의 남쪽 경계선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Ardmore Ave.를 따라 Flower St.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Flower St.를 따라 Clark Ave.까지, 거기에서 남쪽으로 Clark Ave.를 따라 Walnut St.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Walnut St.를 따라 시 경계선까지, 거기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시 경계선을 따라 시작점까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5) 제5 의원선거구는 Highway 91과 시의 동쪽 경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Highway 91을 따라 Bellflower Bike

Trail까지,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Bellflower Bike Trail을 따라 Cornuta Ave.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Cornuta Ave.를 따라 parcel APN 7109003051 (16331 Cornuta Ave.)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parcel APN 7109003051의 북쪽 가장자리와 parcel APN 7109003013 (16326 Eucalyptus Ave.)을 따라 Eucalyptus Ave.까지, 거기에서 북쪽으로 Eucalyptus Ave.를 따라 Alondra Blvd.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Alondra Blvd.를 따라 Bellflower Blvd.까지, 거기에서 남쪽으로 Bellflower Blvd.를 따라 Flower St.까지, 거기에서 서쪽으로 Flower St.를 따라 Ardmore Ave.까지, 거기에서 남쪽으로 Ardmore Ave.를 따라 도시 경계선까지, 거기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시 경계선을 따라 시작점까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B. 세부조항 (A)에 명시된 시의원 선거구는 유권자들에 의해 폐지 또는 개정될 때까지 혹은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 21600~21606조, 또는 그것의 승계법, 또는 유권자의 투표 없이 시의회가 선거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 외의 주법 조항에 따라 수정될 때까지 시행된다.

제 2.28.040조. 선거 일정.

제1, 제3, 제5 의원선거구에서는 2019년(시 선거가 캘리포니아 주립 선거와 통합하도록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의해 허용되거나 주법에 의해 요구된다면 2018년 11월이 될 수도 있음)의 시의원 총선거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이후 4년마다 선출한다. 제2, 제4 의원선거구에서는 2021년(시선거가 캘리포니아 주립 선거와 통합하도록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의해 허용되거나 주법에 의해 요구된다면 2018년 11월이 될 수도 있음)의 시의원 총선거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이후 4년마다 선출한다.

<u>제2조</u>. 실행.

본 장에서 성문화된 조례에서 명시된 선거구를 보여주는 지도는 본 문서의 제시물 1로 첨부되었으며 또한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 본 장에서 성문화된 조례에 기술된 내용과

한 부분으로 포함된 지도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지도가 우선한다.

본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서기는 선거구 인구, 후보자의 자격, 혹은 선거구 선출 의원의 거주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선거구획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시 서기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술적(technical) 조정과 관련하여 시정 담당자와 시 검사와 상담을 해야 하며, 선거구 시행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그러한 조정에 대해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 발효일.

본 조례를 찬성하는 유권자 수가 과반수인 경우, 시의회가 투표 공표를 하는 그 날짜로부터 본 조례는 채택되며, 그 날짜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모순.

본 조례의 조항과 규정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이 전의 시 조례, 발의, 결의안, 규칙 또는 규정과 모순이 있을 때 본 조례의 주제에 관해서는 본 조례의 약관이 우선한다.

제5조. 해석.

본 조례를 해석하거나 모호성을 해결해야 할 때, 본 조례는 명시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 분리 가능성.

본 조례의 어떤조, 세부조항, 하위 세부조항, 문장, 구절, 절, 혹은 부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하거나 위헌으로 여겨질 경우 그러한 판결이 본 조례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조, 세부조항, 하위 세부조항, 문장, 구절, 절, 혹은 부분이 무효 혹은 위헌적이라고 공표된다고 할지라도 벨플라워시의 시민들은 본 조례와 본 조례의 각 조, 세부조항, 하위 세부조항, 문장, 구절, 절, 혹은 부분을 채택하였을 것임을 선언한다.

제7조. 게시.

시 서기는 본 조례의 사본을 법이 요구하는 대로 게시되도록 한다.

제8조. 서명 날인.

벨플라워 시장은 아래 표시된 곳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벨플라워시의 유권자들이 본 조례를 채택했음을 증명하도록 위임받았다.

나는 2016년 11월 8일 벨플라워시의 주민 투표를 통해 본 법안 ____ (조례 번호 1302)가 통과, 승인, 채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_____
시장

입회자:

_____
시서기

제시물 1: 선거구획정안 지도

벨플라워 시

결의안 제 15-80호

선거법 10403조에 준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감리위원회에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2016년 11월 8일의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와 통합을 요청하는 벨플라워 시의회의 결의안

벨플라워 시의회는 시의원 선출과 관련한 시의 선거제도를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부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2016년 11월 8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주립 총선과 동일한 날짜에 통합시키고, 두 선거에 대하여 도시 내 동일한 선거구, 투표소, 선거 관리인으로 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부가 특별 지방자치 선거 개표를 점검하며, 한 건의 선거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벨플라워 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선포하며 결정하고 명령한다.

제1조.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0403조의 요건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2016년 11월 8일 화요일에 있는 주립 총선거와 통합하는 것에 동의해 주기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감리위원회에 신청한다.

제 2조. 발의안은 투표용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다:

조례 번호 제1302에 기술된 대로 벨플라워시의 시의원을 대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로 선출할까요?	**예**
	아니오

제3조. 유권자에게 부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전문과 선거구획정안 지도는 제시물 A 주민 발의안 전문(조례 번호 제1302)에 첨부되었다.

제4조.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한 투표 요건은 총투표수의 과반수 (50% + 1)이다.

제5조. 카운티 선거관리부는 특별 지방자치 선거 개표를 점검하는 권위를 부여받는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한 건의 선거인 것처럼 시행되고 단 하나의 투표용지만 사용된다. 선거는 주립 선거 또는 특별 선거를 규정하는 법 조항에 따라 시행되고 진행된다.

제6조. 감리위원회가 카운티 선거관리부에 통합된 선거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도록 감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7조. 벨플라워시는 본 통합으로 인해 카운티에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것을 인정하므로 그러한 추가 경비를 카운티에 환급하기로 한다.

제8조. 시장 또는 의장은 벨플라워 시의회에 의해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표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시 서기, 혹은 그녀의 정식 임명 대리인이 이에 입회하도록 지시 받았다.

제9조. 시 서기는 본 결의안의 등본을 감리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부에 제출하도록 지시받다.

제10조. 시 서기는 본 결의안의 통과 및 채택을 증명하고 결의안 정본 책자에도 동내용을 처리하며 본 결의안이 통과되고 채택된 시의회 진행 회의록에도 기록한다.

2015년 _____에 벨플라워시의 시의회에 의해 통과, 승인, 채택되다.

_____
스콧 A. 랄슨, 시장

입회인:

_____
데브라 D. 보셥, 시 서기

첨부문서:

제시물A - 주민 발의안 전문 및 선거구획정안 지도
(조례 번호 제1302)

Doc 328851

벨플라워 시

결의안 제15-81호

시의 발안에 대한 서면 논거 우선순위 설정과 공정한 분석 작성을 시 변호사에게 지시하는 벨플라워 시의회의 결의안

벨플라워시에서 2016년 11월 8일에 다음 질문 (“조례 번호 제1302호”)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특별 지방자치 선거를 시행하도록 한다.

조례 번호 제1302호에 기술된 대로 벨플라워시 시의원을 대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로 선출할까요?	**예**
	아니오

그러므로 벨플라워시의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선포하며 결정하고 명령한다:

<u>제1조.</u> 캘리포니아 투표 권리 법 아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멜리즈 및 다수 대 벨플라워시 (*Melliz, et al., v. City of Bellflower, et al*.) 사건번호 제 BC551555 의 합의서 조건에 따라 시 또는 그 어떤 시의원은 시를 대신하여: (i) 상정된 투표 주민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논거 또는 박론을 제기할 수 없다. (ii) 합의서 날짜와 선거 날짜 사이에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그 어떠한 시의원에게 상정된 투표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논거 또는 박론의 제기를 인가하지 않는다.

<u>제2조.</u> 제 1조에 불구하고 각 시의원은 서명란에 신분 명시 목적으로 “시의원”이라는 직책 또는 그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일반 시민으로서 상정된 투표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논거를 제기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정된 투표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박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상정된 투표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논거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3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정된 투표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박론은 제목을 포함하여 총 25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법 제4조 3장 9단에 따라 시 서기가 정하는 날짜까지 논거나 박론은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시 서기에게 더 이상의 상정된 투표 발안에 대한 논거 및 박론은 제출될 수 없다.

제4조.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4조 3장 9단에 따라 상정된 투표 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서면 논거와 박론은 모든 집필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시 서기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 집필자가 한 기관을 대신하여 접수하는 것이라면 기관명과 논거 기관의 주요 임원이며 집필자 최소 한 명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논거 및 박론 서식”(모든 집필자는 논거 및 박론 서식의 뒷장에 있는 논거 및 박론 집필자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과 함께 제출한다.

제5조. 시의회는 시 서기에게 상정된 투표 발안 사본을 시 변호사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한다.

a) 시 변호사는 발안이 현행법에 미치는 영향과 발안의 운용을 보여주는 상정된 투표 발안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한다.

b) 그 공정한 분석은 상정된 투표 발안이 시의 집행부에 의해 투표에 부쳐졌는지 아니면 유권자 성원이 서명한 진정서에 의해 투표에 부쳐졌는지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발안 전문이 투표지 또는 투표 예시 내 유권자 정보 부문에 출력되지 않은 경우 공정한 분석 바로 하단에 최소 10포인트 활자로 다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상기는 상정된 투표 발안 (조례 번호 제1302호) 에 대한 공정한 분석입니다. 만약 상정된 투표 발안의 사본을 원하신다면 시 서기 사무실에(562) 804-1424 로 연락을 주십시오. 무료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d) 상정된 투표 발안에 대한 공정한 분석은 제1차 논거 제기를 위해 시 서기가 정하는 날짜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제6조. 시장 또는 의장은 본 결의안이 벨플라워 시의 시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음을 표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시 서기 또는 그녀의 정식 임명 대리인이 입회하도록 지시받았다.

제7조. 시 서기는 본 결의안의 통과 및 채택을 증명하고 결의안 정본 책자에도 동내용을 처리하며 본 결의안이 통과되고 채택된 시의회 진행 회의록에도 기록한다.

2015년 __ 월__일 벨플라워시 시의회가 통과, 승인 및 채택합니다.

_____
스콧 A. 랄슨, 시장

입회인:

_____
데브라 D. 보셥, 시 서기

Doc 328868